

원산지 규정의 가공공정기준에 따른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 연구

박세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A case study on the exclusion of FTA application base on the processing operation of the rules of origin

Se-Hyun Park^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and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greement tax rate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of the FTA rules of origin.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cases in which export and import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applying the agreed tax rat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ocessing operation standard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F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ax Tribunal precedents, an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rough cases of appeal and verification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re as follow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Research on FTA cases is active, bu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negotiated tax rates based on meeting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applied to fields such as textiles and chemicals in FTA.

Keywords: FTA, Disobey, Processing operation, Specific Processes, Rules of Origin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I. 서론

우리나라 FTA 수출활용률은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82.8%), 중소·중견(60.5%)로 22.3%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활용도는 74.1%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적지않고 협정상대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a First Author, E-mail: sh.park@kangwon.ac.kr

© 2023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FT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원산지기준,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어려움이 원인이 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수준, 원산지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 415건으로 '원산지증명'(7,994, 39.2%)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4천166건, 20.4%), '인증수출자'(1천693건, 8.3%), '관세환급·통관'(1천381건, 6.8%)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¹⁾(박세현, 2023). 또한 산업 및 품목별로 FTA 활용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편이나 섬유 및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특히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정한 공정 혹은 가공공정을 전제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공정에 충족이 되는지의 여부가 FTA 적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재단 및 봉제 등의 공정에 충족되는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수입자 간의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미 적용받은 FTA가 적용배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세심판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과 사후검증 결과 등으로 인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세율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과 이에 따른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되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FTA 활용에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차별성

1. 이론적 배경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FTA는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 활용은 필수가 되었다. FTA는 체약당사국 여부에 따라 동일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실익에 차이가 있는 특혜협정인만큼 무역을 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FTA 적용 요건이 있고 원산지 요건은 그 중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특혜 적용에 따른 사후검증에서 원산지에 대한 입증과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FTA 활용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실제 원산지 요건과 사후검증에서 FTA 적용 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 등으로 협정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경우 원산지 충족에 대한 실질과 증명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 충족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고 협정의 적용과 적용배제에 대한 쟁점 요소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충족여부 등 FTA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이 동시에 사후검증시 주요 검증 항목이 된다. 대부분의 품목에 상기 사항이 적용되고 있지만, 원산지 기준에서 다른 분야와 달리 특정공정 및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화학산업 분야에서는 공정에 대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Table 1. 선행연구

연구	저자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박홍규(2014)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2019)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김희열 외 (2012)
FTA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고재길(2020)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의 경우	최양식 외(2015)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권 외(2015)
한-아세안 FTA원산지규정 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완 외1 (2019)
한-베트남 FTA와 한국섬유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정신모(2019)
한-EU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연구	박세현(2023)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연구	임형철(2015)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석동 외 (2015)
대미 섬유류 수출촉진을 위한 한-미 FTA 활용방안	이춘수 외 (2016)

2. 연구의 차별성

FTA 활용에서 원산지기준의 충족은 필수 사항이므로 원산지에 대한 공통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야 한다. 또한 협정세율 적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사후검증에 철저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 원산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FTA 적용에서 중요한 원산지규정 중 특히 섬유 및 화학공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공공정기준의 적용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배제 등의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에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Ⅲ. 사례연구 검토

1.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사례²⁾

1) 사실관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 제6110호이고, 한-OOO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2단위 세 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과 'CTC+SP'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OOO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Cut'이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

2) 조심2022관0109 (2023.04.11.)

여, 청구법인은 ‘Cut’의 의미는 ‘절단’이고, ‘Cut’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절단’ 또는 ‘재단’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규정 일부, 한-OOO FTA “Product Specific Rules”과 “Annex-Product Specific Rules”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Cut’이 ‘재단’이 아닌 ‘절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HS CODE(국제품목분류체계) 등과 2022.2.1. 발효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으로만 정하였고, 한-OOO FTA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존 2단위 변경과 SP에서 SP를 제외한 2단위 변경기준으로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015년 OOO에서는 한-아세안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OOO은 “비원산지 ‘실’을 사용하여 OOO에서 편물제 의류의 각 부분(앞판, 뒤판, 소매 등) 편직(Knitting)하여 각 부분을 봉제(Sewing)하여 완성품(HS6110)을 제작하는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넥(Neck), 암홀(Armhole)을 단순 절단하는 마무리 작업이므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업체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2) 주요쟁점

- 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②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③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3) 판단 및 심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7조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 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O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제3.22조에서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OOO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OOO장관의 유권해석(OOO, 2015.6.9.)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OOO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000에 차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편물제 의류의 임가공 계약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고, 쟁점물품 제조를 위해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000 생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000 생산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품질관리전문가를 000 공장에 직접 보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인 특정공정기준(SP)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가공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및 시사점

본 건은 FTA 적용 요건인 원산지 기준에서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섬유류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 적용 후 가공공정기준 불충족 등으로 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또한 가산세가 부과 처분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례이다. 사례 및 쟁점을 분석한 결과 재단과 봉제 그리고 편성 공정 등에 대해 가공공정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수입자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협정세율과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이다. 쟁점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리를 분석해보면 FTA특례법 등에서 과세관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조사결과 원산지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 적용받은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추정 세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기 근거 내용들을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원산지검증 후 해당 물품과 동일 물품 등에 대해 협정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쟁점② 해당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리를 분석해보면, 협정세율 적용에서 해당 품목에 요구되는 원산지기준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인 만큼 가공공정기준에 있어 재단, 봉제, 편성 등에 대해 원산지 충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협정문과 관련 유권해석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섬유류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단과 봉제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재단과 봉제 공정없이 단순히 원사로부터 편성을 거쳐 제조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해당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 후 봉제를 거친 공정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절단이나 편성 공정으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해 기 적용받은 협정세율을 적용배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대부분의 관련 사례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쟁점 ③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리를 분석해보면협정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된 사항이다. 가산세는 협정세율을 부적합하게 적용을 받았거나 수입자의 고의나 과실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경우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③의 사항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해당 사례를 분석해보면 쟁점물품 등에 대해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임가공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점, 쟁점물품 생산에 자재 등을 제공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쟁점물품 생산에 대해 가공공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생산정보와 원산지판정에 대한 내역은 수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 사례에서는 임가공 계약 형태 등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생산 과정과 정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여진다.

2.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사례³⁾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ООО에 소재한 수출자가 생산한 양모 및 캐시미어 스웨터, 카디건 등 의류를 수입한다. 청구법인은 ООО에 소재한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매매 기본계약(Basic Purchase and Sal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물품을 발주하면, AAA는 그와 위탁가공계약(Processing contract)을 체결한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요청한다. 수출자는 ООО에 소재한 AAA의 계열회사이고, 생산자, AAA 및 ООО의 드릴 원사(Yarn) 공급 업체 (BBB 및 CCC, 이하 “원사 공급 업체”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지분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법인들이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110호이고,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MOIT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C+SP 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 자율점검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CTC+SP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한-베트남 제61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 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이며, 쟁점물품 중 위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을 받은 후 원산지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은 2018.10.22.에 신고한 2건뿐이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베트남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한-아세안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주요쟁점

- ①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성 여부

3) 판단 및 심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ООО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베트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인 MOIT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의류의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이 편성 공정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OOO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의 결정이며, 또한 이 OOO 소재 공장은 이미 2016년경 쟁점업체와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어, 공정 등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분석 및 시사점

쟁점①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리를 분석해보면, 앞선 사례와 같이 FTA 적용에 필수요건이자 중요한 요소가 원산지기준이다. 특히 섬유류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가공공정기준에서 사례의 쟁점 중 하나인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배제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이다.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FTA 협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에는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경우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는 점, 또한 협정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공정기준을 미흡 또는 미충족하고 있고 FTA 적용에 있어서 협정문 및 FTA 특례법과 자국법 등에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검증 시 충분히 소명이 안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을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

쟁점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리를 분석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사례연구1과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가산세가 부과·징수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 적용한 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적법성 있게 발급되었다. 기관발급방식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에 허위나 오류 등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신뢰성있게 발급된 유효한 서류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산지간접검증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회신받은 점 등을 비추보면 수입자는 적어도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와 원산지기준의 충족에 대해서는 신뢰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관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은 본 사례의 청구법인이 아닌 타 기업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하기는 어려운 점과 쟁점물품의 생산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어 생산 공정 등에 관해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가산세가 부과·징수되기 위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수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수입자의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수출자가 발급해주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 처분을 받는 것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을 벗어나게 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없이 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성 여부에서는 쟁점②와 관계하여 청구법인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된 점, 즉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는 가산세 부과 처분과 함께 잘못된 처분으로 적합하게 판결되어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3.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사례⁴⁾

1) 사실관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110호이고, 한-OOO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OOO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은 OOO에서 생산된 제품이고(The goods exported by OOO were produced in OOO), 실에서 스웨터로 변경되는 모든 제조가공이 OOO에서 이루어진 제품(We found that production from yarn to SWEATERS is actually processing in OOO.)”이고, 추가로 “본래 편직공정은 커팅 없이 이루어진다(The nature of knitting production is just knitted processing without cutting)”고 부연설명하고 있는 OOO의 원산지검증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Cut이 재단이 아닌 절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HS CODE(국제품목분류체계) 등과 2022.2.1. 발효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으로만 정하였고, 한-OOO FTA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존 2단위 변경과 SP에서 SP를 제외한 2단위 변경기준으로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①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재단 없는 편직공정으로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OOO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OOO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4) 조심2022관0107 (2023.03.15.)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주요쟁점

- 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②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3) 판단 및 심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FTA특례법 제17조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 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000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부록 1 제17조에서 부속서 3 및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세율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쟁점물품은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000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000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건대,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000에 차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편물제 의류의 임가공 계약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고, 쟁점①물품 제조를 위해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000 생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000 생산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품질관리전문가를 000 공장에 직접 보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어 쟁점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인 특정공정기준(SP)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000 생산공장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쟁점②물품을 제조하거나, 000 생산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쟁점②물품을 제조한 후 수입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가공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및 시사점

본 건은 주요쟁점과 판단 및 심리가 사례연구 검토 1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쟁점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협정문, FTA특례법 등에서 원산지조사를 수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조사결과 원산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뿐만아

나라 체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FTA 협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② 해당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 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섬유류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편성 공정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협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의류 패턴을 따라 재단과 봉제 공정을 거친 경우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쟁점 ③ 청구범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부과 요건 및 부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한 사항이 되는 만큼 해당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가 납세자의 귀책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수입자가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과 생산 및 원산지 판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가산세 부과

관세청 운영지침에 의하면 부적합한 협정관세의 적용 원인과 사유가 운영지침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로는 첫째, 부적합한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제한의 사유가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에는 수입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 수입자의 범규정에 대한 해석의 오류나 착오에 의한 경우, 수입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의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세관장은 부적합한 협정관세의 적용 원인과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셋째,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수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요건에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다.⁵⁾ 이 밖에도 원산지 검증의 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가산세 부과요건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실이나 고의여부와 범규정에 대한 착오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⁶⁾(김진규, 2019).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검증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가산세의 경우 수입자의 고의나 과실,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규정에 대한 해석의 오류 등에 해당되는 자에 따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과세요건 입법화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을 구체화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의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원칙, 그리고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를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과 관세법 등에서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5) FTA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참조

6) 대법원 2002두 10780(2004.6.24.); 대법원 2005두 10545(2007.4.26.)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FTA 원산지조사에 관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그리고 가산세 부과와 면제요건을 규정한 것은 국세의 입법 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비추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김기인, 2007).

FTA는 체결 당사국 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협약이지만 협정관세 적용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국내법 등 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만큼 현행 FTA 운영지침의 용어의 정의, 가산세 부과와 면제 등에 관해 상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명확히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박세현, 2023)

2) 가공공정기준 및 협정세율 적용기준의 이해와 확인필요

FTA 적용에서 원산지 판정과 충족에 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인정공정이나 특정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확한 확인없이 협정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과 해당 공정의 충족여부를 틀리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만큼 자의적 판단은 주의해야하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례처럼 섬유산업 및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FTA 적용에 있어 원산지 규정 중 특히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FTA 활용 후 협정적용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특정 공정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는 만큼 협정에서 인정하는 공정을 실제로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에 대한 사항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의 적용과 관세면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과세관청은 사전심사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FTA 적용에서 본 논문에서 살펴는 원산지기준의 충족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FTA활용에서 원산지규정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세율 배제에 대해 판례와 원산지 사후검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고찰해 보았다. 특히 섬유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인 가공공정기준을 중심으로 이미 적용받은 협정에 대해 협정세율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등의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가공공정기준 적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판례에서 협정적용이 배제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문제없었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기준으로 충족되기 위한 가공공정기준에는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편성공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편성 공정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둘째, FTA 특례법 등에서 원산지에 대한 조사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조사결과 신고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르거나 원산지기준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또한 협정문과 국내법 규정 등에 따라 협정세율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점, 셋째, 협정세율 적용배제 처분시 함께 처분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협정인 만큼 원산지 유효성에 대해 수입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입자의 고의나 과실 및 범규정에 대한 해석의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으로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의해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다섯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이다.

원산지기준에 대한 불충족으로 인한 경우 관례에서는 대부분 과세관청의 협정세율을 적용배제 처분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원산지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질적인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하다. 다만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만큼 가산세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공공정기준에 따른 협정 배제 사례에 대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전체 협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지는 못한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가공공정기준과 관련된 전체 협정의 관례분석 및 해외 검증사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고재길 (2020),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30(4), 95-119.
- 김기인 (2007), 한국관세법-기초이론과 실무(개정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39-69.
- 김진규 (2019),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4), 47-67.
- 김태인, 정재완 (2023), *관세법(개정판)*, 도서출판 청람, 390.
- 김희열·곽근재 (2012),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6(4), 499-522.
- 박홍규 (2014),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2), 47-72.
- 박세현 (2023), "한·EU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연구", *지역산업연구*, 46(4), 153-169.
- 이용완·허윤석 (2019),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2(1), 229-254.
- 이석동·이춘수 (2015), "한·미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40(2), 71-91.
- 이석동·이춘수 (2016), "대미 섬유류 수출촉진을 위한 한·미 FTA의 활용방안", *무역보험연구*, 17(1), 141-170.
- 임형철 (2015),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연구: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신모 (2019), "한·베트남 FTA와 한국섬유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권·이병문 (2015),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0(3), 203-224.
- 최양식·이병락 (2015),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의 경우", *국제상학*, 30(4), 111-12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glaw.scourt.go.kr>
- 산업통상자원부 FTA사이트 <http://fta.go.kr>
-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